

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(대안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청소년지도자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지도자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(안 제1조).
-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, 인권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고, 청소년지도자의 보수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책무를 부여함(안 제3조).
-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와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위원회를 두도록 함(안 제4조).
-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처우개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소년지도자의 보수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침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(안 제5조).
- 청소년지도자가 청소년시설등의 위법·부당 행위 등을 신고한 행위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함(안 제6조).
- 성평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소년지도자의 근로여건,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와 그에 대한 개선 조치 현황, 보수

지침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실태를 조사하여 공표하도록 함(안 제7조).

II. 검토의견

1. 청소년지도자의 보수 지침 준수 노력의무의 범위 관련 (안 제5조)

- 안 제5조¹⁾는 2026. 7. 1. 시행 예정인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 제3조제3항²⁾과 동일하게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마련한 청소년지도자의 보수에 관한 지침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, 이 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육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민간 시설의 청소년지도자도 포함됨.
-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, 청소년지도자 보수 지침 준수 노력대상이 제정안 제5조와 같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한정되어 있는 경우 청소년지도자의 소속에 따른 보수 또는 처우수준이 달라질 수 있는

1) 안 제5조(청소년지도자 보수 지침)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처우개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지도자의 보수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하고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침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1. 기본급과 수당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
2. 연장근로·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따른 임금의 가산지급에 관한 사항
3. 승급 및 승진에 관한 사항

2)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 (법률 제21260호, 2026. 7. 1. 시행예정)

제3조(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)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처우개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하고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침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1. 기본급과 수당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
2. 연장근로·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따른 임금의 가산지급에 관한 사항
3. 승급 및 승진에 관한 사항

점이 심사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.

- 참고로,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3조의3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영화노사정협의회와 협의하여 마련한 표준보수지침을 모든 영화업자와 영화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³⁾

2. 그 밖의 사항

- 제정안의 그 밖의 사항에 대한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, 안 제4조4)에 따른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다른 위원회의 요건을 관련 입법례⁵⁾를 고려하여 조정하고, 청소년지도자의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

-
- 3)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3조의3(표준보수에 관한 지침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조의2에 따른 영화노사정협의회와 협의하여 영화근로자의 표준보수(보수란 영화근로자가 역무를 제공하는 반대급부로 지급받는 모든 대가를 의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 관한 지침(이하 “표준보수지침”이라 한다)을 마련하고, 이를 보급·권장하여야 한다.
② 영화업자와 영화근로자는 표준보수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4) 안 제4조(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위원회) ①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와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 및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각각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위원회(이하 “처우개선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다만, 시도 및 시·군·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.
②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1.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
2. 제5조에 따른 보수 지침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
③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④ 시·도 및 시·군·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.
- 5)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0조(생활보장위원회) ① 이 법에 따른 생활보장사업의 기획·조사·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시·도 및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각각 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. 다만, 시·도 및 시·군·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·도 또는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.

하려는 입법취지(안 제1조6)) 등을 고려하여 안 제6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의 신분보장 규정⁷⁾이 이 법 시행 이전에 위법·부당행위 등을 신고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부칙 규정을 추가하는 등의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,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전문위원 박 혜 진)

6) 안 제1조(목적) 이 법은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청소년지도자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지도자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7) 안 제6조(청소년지도자의 신분보장) 청소년지도자는 청소년시설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·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.